



국세청, 국내산 녹용 부가가치세 면제 최종 확인

- 지난해 국내산 절편 생녹용에 부가가치세 부과하려 해 -

냉동 후 절편포장, 판매하는 국내산 생녹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7월25일 본회로 공문을 발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산 생녹용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된다고 통보해왔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절편 포장된 국내산 생녹용에 대해 '절단 가공' 되어 원래의 성상이 변한 것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회는 공문을 통해 녹용을 잘게 절단하는 것은 보통 성인 60명분에 해당하는 전지녹용을 그대로 보관·판매할 수 없어 행하는 부득이한 행위로 이를 가공으로 볼 수는 없으며, 국산녹용은 반드시 한약재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 상태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히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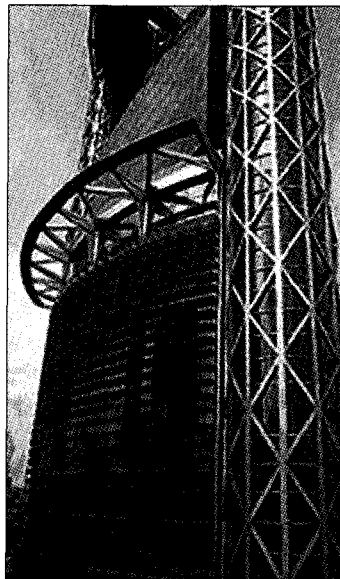
특히 "잘게 절단하는 과정은 ▲ 국세청

전지녹용을 그대로 썰기만 하는 것으로서 녹용 원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만약 국세청의 주장대로 성상이 변화했다면 성상변화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쇠고기·돼지고기 등을 얇게 썰어서 판매하는 것은 성상이 그대로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는 급격한 농축산물 개방화에 따른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1차 농축산물에 대한 면세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녹용은

1만5천여 농민들이 생산하는 축산물로서 축산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여타 농축산물에서와 같이 가공의 목적으로 행하지 않은 보관·유통상의 절단 및 건조 등은 원시가공으로 분류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이 공평과세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후 본회의 공문을 접수한 국세청은 재정경제부를 통해 이를 다시 접수, 최종적으로 국내산 절편 가공된 녹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양육**



▲ 국세청